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5월 16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제안이유

-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도래한 시분청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하반기 조직개편시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연장함. (안 부칙 제2항)
 - 당초 : 2005년 6월 30일
 - 연장 : 2005년 9월 30일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?	○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여 존속기한을 조정하려 했으나 상정되지 못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○ 만약 7월달 조직개편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?	○ 7월 회기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의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78호
의결 년월일	2005. 5. 19 (제119회)

제안년월일 : 2005년 5월 16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과 관련 조직개편안이 금년 7월 회기에서 부결될 경우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“2005년 9월 30일”까지로 하고자 하였으나 “2005년 12월 31일”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함.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항 중 “2005년 9월 30일”을 “200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 본청 총무국 주민자치과 의 기구설치 기한은 <u>2005</u> <u>년 6월 30일까지</u> 로 한다.	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 ----- ----- <u>2005년</u> <u>9월 30일</u> -----.	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 ----- ----- <u>2005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96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
“2005년 6월 30일” 을 “2005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2003. 8. 11 조례1965호></p> <p>①(시행일) (생략)</p> <p>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본청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<u>2005</u> <u>년 6월 30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2003. 8. 11 조례1965호></p> <p>①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 ----- -----<u>2005년</u> <u>12월 31일</u>-----</p>